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987
----------	------

제안년월일 : 2021년 12월 17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유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791호)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892호)을 일괄 심사한 결과,
-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는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선임 대상을 ‘규칙에서 정하는 실·국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칙에서는 본부장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수정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한강공원 내 기초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방역수칙 미준수 등을 위한 단속 활동을 공무원과 청원경찰이 합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그간 지속적으로 업무 혼선이 초래되어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함.

이에, 경찰청에서는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는 경비구역 내 경비에 한정되어 본 조례에 단속업무를 규정하더라도 단속할 수 없다고 회신함에 따라 본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어문 규정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제2항제6호 및 제14조제3항).
- 나. 금지행위 단속규정 중 “단속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그 외에 규칙으로 정한 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로 개정함(안 제19조제1항).
- 다. 금지행위 단속규정 중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개정함(안 제19조제3항).
- 라.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 당연직 위원 선임 대상에 ‘실·국장’ 외에 추가적으로 ‘본부장’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제1호).
-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에게”를 “단체에”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지”를 “그렇지”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그 외에 규칙으로 정한 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를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공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실·국장”을 “실·국장·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9조(공동대책 수립) ① (생 략)</b></p> <p>② 시장은 <u>제1항의 공동대책 수립</u>을 위한 조사·연구·복원·복구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b>제9조(공동대책 수립) ① (현행과 같음)</b></p> <p>② ----- <u>제1항에 따른</u> ----- ----- -----.</p>
<p><b>제14조(이용료) ① (생 략)</b></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p> <p>1. ~ 5. (생 략)</p> <p>6.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u></p> <p>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u>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u></p> <p>④ ~ ⑦ (생 략)</p>	<p><b>제14조(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b></p> <p>②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③ ----- ----- . &lt;단서 삭제&gt;</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b>제1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b></p>	<p><b>제1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b></p>

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 ④ (생략)

제1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 9. (생략)

1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지 않는다.

가. ~ 라. (생략)

11. ~ 15. (생략)

② (생략)

제19조(금지행위의 단속) ① 시장은 제17조 금지행위 단속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그 외에 규칙으로 정한 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금지행위를 단속하는 자는 단속 전에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표식을 내보여야 한다.

-----  
---- 단체에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금지행위) ① -----  
-----  
-----.

1. ~ 9. (현행과 같음)

10. -----  
-----  
-- . -----  
----- 그러지 -----.

가. ~ 라. (현행과 같음)

11. ~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금지행위의 단속) ① -----  
-----  
--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후단 삭제>

② ----- 공무원은 -----  
-----  
-----.

